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57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205707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738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 선고 2018. 1. 11.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7381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8. 22. 접수 제737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3. 7. 19. 접수 제643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8. 22. 접수 제737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3. 7. 19. 접수 제643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8. 22. 접수 제737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3. 7. 19. 접수 제643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의 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반도체개발 및 판매, 비철금속 제조 및 재생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D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2. 3. 30.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

2) 원고는 C과 주식회사 더블에이치파트너스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23억 원, 발행일 2010. 12. 9., 지급기일 2011. 3. 20.,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수취인이었던 E으로부터 2015. 2. 12.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받고, E은 2015. 2. 24. C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는 C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나. C의 재정상태

1) C은 2011. 3. 3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아 2011. 4. 25. 코스닥등록법인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2) 표준대차대조표(을나 제5호증의3)에 따르면 C은 2015. 12. 31. 기준 그 자산총계가 2,751,576,761원, 부채총계가 11,338,736,218원이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명7613 재산명시 사건에서 C이 2015. 6. 15.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C은 그 무렵 적극재산으로 3,831,605원의 예금채권,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85,505,024원의 회생채권 등 총 189,336,629원 상당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다. F의 C 대표이사 취임 및 그 명의의 가등기 경위

1) C은 상장 폐지 전인 2010. 10. 7. 9억 9,900만 원의 전환사채, 2010. 10. 14. 10억 원의 전환사채, 2010. 11. 18. 20억 원의 전환사채를 각 발행하였는데, F은 위 각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2) F은 2011. 5. 6.경까지 C의 보통주 22,474,385주를 취득하는 한편 2011. 3. 31.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8. 16.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그 후 2013. 7. 18. 대표이사직에서, 2014. 3. 31. 사내이사직에서 각 퇴임하였다).

3) F은 대표이사 재임 중 C 소유로서 그 공장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1	파주시 G(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11. 10. 10.	파주등기소 제74009호	2011. 10. 5. 매매예약
2	파주시 G 가동 건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2012. 1. 13.	파주등기소 제3363호	2012. 1. 4. 매매예약
3	파주시 G 나동 건물(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12. 4. 26.	파주등기소 제31361호	2012. 4. 25. 매매예약

4)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관하여 C의 이사회 의사록(을나 제2호증의 1, 2, 3)이

작성되었는데, ① 위 순번 1 매매예약에 관한 2011. 10. 5.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F 등 3명의 이사가
 날인하였고, ② 순번 2 매매예약에 관한 2012. 1. 4.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F 등 3명의 이사가
 날인하였으며, ③ 순번 3 매매예약에 관한 2012. 4. 25.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F 등 2명의 이사가
 날인하였다(이사 L의 경우 이름은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각
 이사회 의사록에는 날인한 이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다만 위 ③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하여
 이사 L의 경우 위와 같이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나 2012. 4. 17.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다). 한편 C의 등기이사는 위 ① 및 ② 이사회 의사록 작성 당시에는 총 5명(H1), I2), F3), J4), K5))이었고,
 위 ③ 이사회 의사록 작성 당시에는 총 3명(F, K, L6))이었다.

5) 위 각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C의 주주총회 결의는 없었다.

라.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등기 경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부기등기) 및 이를 통해 이전받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1	2013. 7. 19.	파주등기소 제64379호	피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등기(부기등기)	2013. 7. 15. 계약양도
2	2013. 8. 22.	파주등기소 제73702호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2013. 7. 4. 매매

1	2013. 7. 19.	파주등기소 제64380호	피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등기(부기등기)	2013. 7. 15. 계약양도
2	2013. 8. 22.	파주등기소 제73703호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2013. 7. 4. 매매

1	2013. 7. 19.	파주등기소 제64381호	피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등기(부기등기)	2013. 7. 15. 계약양도
2	2013. 8. 22.	파주등기소 제73704호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2013. 7. 4. 매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 4, 5,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C이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회사 대표이사인 F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상법 제398조에 규정된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가등기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양도로 인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C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므로 그 각 부동산에 관하여 F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C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가등기와 관련하여 C 내부에서 이사회 승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으므로, C(원고)은 피고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가등기로 인하여 C에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C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업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불과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담보를 위한 가등기로서 그 설정은 어떠한 양도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데, C이 무자력의 상태에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F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사회 승인 부존재로 인한 원인무효 여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사회 승인 가) 관련 법리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은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 상법 제398조).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는 결의에 의해야 하는데(구 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구 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15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현행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것)은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8조 제1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위 규정이 적용된다(부칙 제2항)].

나) 판단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사회 결의[기초사실 다. 4)항 기재 ①, ②번 이사회 결의]에는 구 상법이 적용되므로 그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위 각 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치게 되는 F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에 해당하므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나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2) 그런데 위 각 이사회 결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① 총 재적이사 5명 중 F 등 3명의 이사가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갖추었고 ② F이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출석이사 전원인 2명의 찬성이 있어 출석이사 과반수에 의한 결의가 되었으므로, 구 상법 제398조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사회 승인 가) 관련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그 무효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등 참조),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회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등 참조). 이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해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사회 결의[앞서 본 기초사실 다. 4)항 기재 ③번 이사회 결의]에는 현행 상법이 적용되고, 당시 재적이사는 3명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사회 결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F를 제외하면 1명에 불과하여, 이사 2/3 이상에 의한 적법한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7).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위와 같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사 L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②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사회 결의 시점(2012. 4. 25.)은 현행 상법 규정 시행일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인데 회사가 아닌 개인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현행 상법 규정의 시행 여부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 상대방인 피고로서는 회사 대표자인 F이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인 이사회 승인 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로 인한 원인무효 여부

1)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참조).

2)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과 갑 제3, 4호증, 을나 제9, 14, 15호증의 각 기재, F의 1심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이 F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F 앞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 C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이 F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F 앞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재산처분행위가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C의 주요 영업이 비철금속 제조 및 재생 가공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의 1심 증언에 의하면 위 영업 내용은 알루미늄과 샷시를 용해해서 빌레트를 생산하는 것이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자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그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부동산 내에서 위와 같은 영업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이다.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C의 영업이 양도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애초부터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이 위 영업을 영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장 내에는 2016. 5. 4.까지 가액 합계 약 317,520,000원의 알루미늄 용해로, 탈가스장치, 빌레트 자동 적재장치, 균질로, 냉각챔버, 빌레트 절단 장비, 집진설비, 알루미늄 재처리 시설 등이 존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경인메탈은 2014. 2. 14. C과 사이에 1년간 위 경인메탈이 C에 임가공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C은 공급받은 자재로 임가공을 하기로 하는 빌레트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 7. C로부터 그 소유의 기계장치, 시설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등을 1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C은 2014. 2.경까지도 빌레트 임가공 영업이 가능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칠 당시인 2011년에서 2012년 사이는 물론 그 이후에도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공장 건물 내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C의 재무상태표(갑 제3호증)에 의하면, ① 2012. 12. 31. 기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C의 총 부동산 가액은 4,726,329,302원이고 그 감가액은 359,737,651원인 사실, ②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3. 12. 31. 기준 C은 어떠한 토지 및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위 토지와 건물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나온다), ③ 2012. 12. 31. 현재 C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의 총 가액은 9,523,904,328원이고 그 감가누계액은 7,544,870,806원인 사실, ④ 2013. 12. 31. 현재 C의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의 총 가액은 9,919,728,217원이고 그 감가누계액은 8,075,550,81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등기 이후인 2012년에서 2013년의 시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은 C에게 가장 고액의 자산으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가장 높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C이 취득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등 알루미늄 빌레트 제조 및 가공 영업을 위한 자산들이고, 비록 이 자산은 감가상각율이 높아 C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부동산자산에 비하여 미미하나 영업 자체를 위한 이른바 영업용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단순히 취득가액의 측면에서만 비교하더라도 부동산자산의 2배에 달한다. 그렇다면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두고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C은 2013년 총매출액 31,130,825,177원, 2014년 총매출액 18,550,200,217원, 2015년 총매출액 2,773,007,320원을 달성하면서 영업을 해왔고, 영업 과정에서 행정법규 위반으로 2014. 11. 28. 조업정지 10일, 2014. 11. 7.과 2015. 1. 2. 각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2016. 12. 12. 현재까지도 약 20명의 임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매출액의 감소 정도 및 현재 임직원의 규모를 보면 C의 경영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고 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최소한 위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각 가등기 설정으로 인하여 C의 영업을 양도되거나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 영업을 위 매매예약 및 가등기 시점인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던 점을 알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공도일

판사박선영

별지

- 1) 2009. 2. 27. 취임(2009. 3. 12. 등기) → 2012. 2. 27. 퇴임(2012. 4. 3. 등기)
- 2) 2009. 2. 27. 취임(2009. 3. 12. 등기) → 2012. 2. 27. 퇴임(2012. 4. 3. 등기)
- 3) 2011. 3. 31. 취임(2011. 4. 26. 등기) → 2014. 3. 31. 퇴임(2014. 4. 3. 등기)
- 4) 2011. 10. 5. 취임(2011. 10. 5. 등기) → 2012. 4. 20. 사임(2012. 4. 23. 등기)
- 5) 2011. 10. 5. 취임(2011. 10. 5. 등기) → 2013. 3. 29. 사임(2013. 4. 4. 등기)
- 6) 2012. 3. 30. 취임(2012. 4. 3. 등기) → 2013. 7. 18. 사임(2013. 7. 24. 등기)
- 7) 다만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지는 않았으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사 L까지 찬성하였다고 보면 적법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